

■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[별표] <신설 2022. 6. 28.>

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(제16조의8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인지는 제2호 각 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령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5조의4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
나.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	법 제15조의4 제1항제2호	지정취소			
다. 법 제1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5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	지정취소			
라. 뇌은행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5조의4 제1항제3호	시정명령	시정명령	시정명령	지정취소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5조의4 제1항제4호	시정명령	시정명령	시정명령	지정취소